



보험 · 연금

국민건강보험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과 그 피부양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가입자 등을 제외한 시내에 주소가 있는 분은 모두 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탈퇴, 변경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은 세대 단위로, 세대주가 가입·탈퇴·변경의 신고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 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 전입했을 때
-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등

<탈퇴>

- 직장의 건강보험을 가입했을 때
- 전출(귀국)할 때
-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등

신고처▶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시민 서비스 센터

<70세 이상인 분의 의료제도>

①70세 이상인 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 이외의 분)

70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 (1일에 태어난 분은 그 다음 달)부터 부담비율이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을 70세가 된 달의 하순경에 보내드립니다.

②75세 이상인 분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진료 대상이 됩니다.

(75세 생일 전월에 피보험자증을 송부합니다.)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분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어 신청에 따라 광역 연합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분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의한 진료에 해당됩니다.

●보험료

<보험료의 계산방법>

다음의 ① + ② + ③ = 보험료입니다.

①소득할액/(총소득금액 등 - 기초공제)×소득비율

②균등할액/1인당 금액×피보험자 수

③평등할액/1세대당의 금액

※일괄 납부가 곤란할 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체납하게 되면 독촉이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개호(간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 이 계신 세대는 개호(간호)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납부는 계좌 자동이체가 원칙이나 납입통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징수)

편의점 · 스마트폰 결제(오카야마시 지정)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입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연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특별징수)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징수 합니다.

-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이외의 경우
- 연금이 연간 18만엔 미만의 경우
-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이 연간 18만엔 미만인 경우
- 개호(간호)보험료 공제액과 합친 금액이 연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연금)의 2분의1을 넘을 경우
-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있는 경우 (납부상황에 따라 특별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
- 특별징수 세대의 세대주가 금년도 75세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는 편리한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의 납부는 편리하고 정확한 자동이체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요금과 계좌이체 담당 ☎086-803-1171

●국민건강보험의 지급(관련 주요 내용)

필요한 수속은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복지 사무소로

<요양비 지급>

의료기관 청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급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자기 부담비율

- ① 70세 이상/현역 수준의 소득자 : 3할, 일반 2할
- ② 의무교육 취학 후 ~ 70세 미만 : 3할
- ③ 의무교육 취학 전 : 2할

※현역 수준의 소득자▶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 중 시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일부 조정 있음)의 피보험자나 동일 세대에 있는 피보험자. 단,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의 수입의 합계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 신청 하시면 2할 부담이 됩니다.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 청구에 납부한 1개월의 자기 부담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신청에 따라 지급합니다.

<고액 개호(간호)합산 요양비>

연간 의료비가 고액인 세대에 개호(간호)보험의 수급자가 있을 경우, 의료 보험과 개호(간호)보험 모두의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연간 한도액에서 500엔을 초과한 경우는 신청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

※신청은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로

의료기관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할 경우, 한 의료기관의 청구에서의 납부 금액은 한도액까지만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미납일 경우는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또 70세 이상인 분 중에서 과세소득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도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비>

불가피한 사유로 피보험자증을 제시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하고 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인정되면 자기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출산육아 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경우 50만엔(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대상의 출산이 아닌 경우는 48만 8천엔)을 지급합니다. 임신 12주(85일) 이상의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급됩니다. (의사의 증명서 필요) 단, 출산일이 2023년 3월 31일 이전일 때에는 지급액이 다릅니다.

<장례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분에게 5만 엔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면제상당

재해, 사업 도산, 실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로

●보험료 납부상당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요금과 ☎086-803-1641~3

생활 습관병은 의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건강 검진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 보세요.

건강검진·보건지도의 안내

4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오카야마시 국민건강보험 특정 건강검진·특정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5~39세인 분을 대상으로 한 『35세부터의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호(간호)보험

개호(간호)보험과 ☎086-803-1240~2
각 복지사업소

●개호(간호)보험 대상자

- 65세 이상인 분(제 1호 피보험자)
-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신 분 (제 2호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

- 65세 이상인 분(제 1호 피보험자)

본인의 소득과 세대의 과세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간 18만엔 이상의 노령·퇴직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65세가 되신 분이나 전입하신 분은 공제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납부서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해 주십시오.

- 40세 부터 64세 까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 (제 2호 피보험자)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납부 상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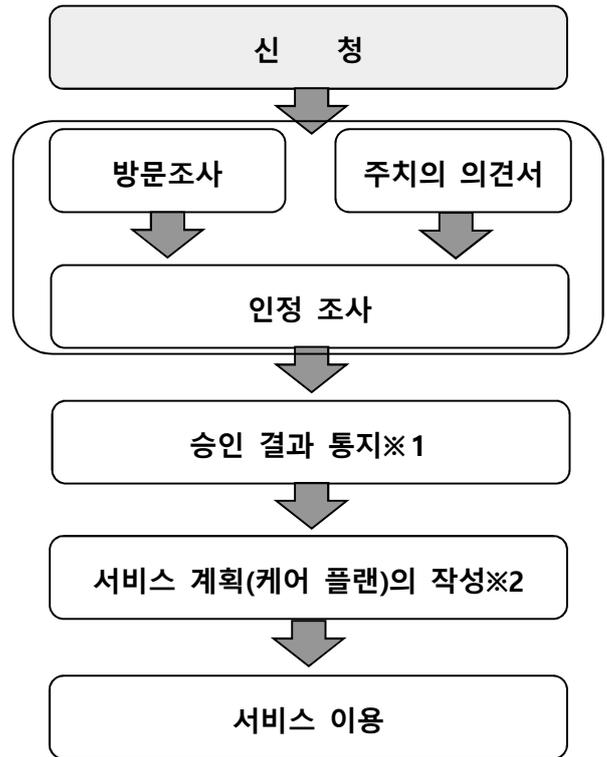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요금과 ☎086-803-1641~3

●개호(간호)의 설정

일상생활에서 개호(간호)나 지원을 필요로 하여 개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복지 사무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서



※1: 개호(간호) 필요도가 1~5로 인정 된 분은 개호(간호)서비스 대상자로, 필요도 1, 2로 인정되면 개호(간호)예방 서비스 대상자로, 간호나 지원이 불필요하신 분은 간호 예방 사업(지역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2: 개호(간호) 서비스는 케어 매니저가 있는 주택 개호(간호) 지원 사업자가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개호(간호) 예방 서비스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의료조성과 ☎086-803-1217

보험료의 납부 상담=요금과 ☎086-803-1641~3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대상자(피보험자)

- 75세 이상인 분(가입 신청 불필요)
- 65세~74세로 일정한 장애가 있는 분(신청 필요)

●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는 균등할액과 소득할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됩니다.

특별징수가 되지 않는 분은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보통징수)가 됩니다.

●납부 상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해 주십시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방법 변경>

국민건강 보험 제도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이행된 분으로, 계좌이체를 원하실 경우 다시 계좌이체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인계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경감>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경감 조치가 있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지급(관련 주요 내용)

<요양비 지급>

의료기관 창구에서 피보험증을 제시하여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①현역 수준의 소득자 : 3할

②기타 : 1할

※현역 수준의 소득자...시민세 과세 소득(각종 공제 후)이 145만엔 이상인 피보험자 및 동일 세대에 있는 피보험자. 단, 동일 세대의 피보험자 전원의 수입 합계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 신청에 따라 1할 또는 2할 부담이 됩니다.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에 지급한 1개월의 자기 부담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후 초과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입금계좌를 신청해 주십시오.

<요양비>

해외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나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의료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 이미 부담한 전액 중에서 추후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자기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기타 급부에 대해서는 의료조성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각 구청 시민연금보험과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중,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학생을 포함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등

<국민연금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20세가 되었을 때
- 회사를 퇴직했을 때
- 후생연금(공제조합)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회사원 등)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 연금을 청구할 때
- 연금 가입자,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보험료의 면제·유예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월 분까지 납부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

경제적 이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유예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 학생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신청을 해 승인 되면 납부가 유예됩니다. 면제·유예, 학생 납부 특례가 인정되면 10년 이내일 경우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전 산후 기간의 면제 제도>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 전후의 보험료가 신고를 통해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한 달의 전월부터 4개월간(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6개월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각종 연금 등의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노령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면제 기간, 합산대상 기간을 합하여 10년(120개월) 이상의 수급 자격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 원칙은 65세부터 이나 희망에 따라서는 60세부터 조기 청구 또는 66세 이후로 늦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추가) 연금>

부가(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 기초연금에 가산됩니다.

<장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 또는 20세 전에 처음으로 진단 받은 어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한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유족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 또는 노령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이 25년 이상인 분이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분의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라 함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장애인은 20세 미만)입니다.

<미망인 연금>

제1호 피보험자 및 임의 가입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면제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남편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내가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혼인 기간 등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

제1호 피보험자 및 임의가입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3년(3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기초연금이나 미망인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